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 호

##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업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 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안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업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업단지관리법의”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로 한다.

부칙(조례 제 68호, 1988. 5. 1.)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취득한 사업용과세물건(중전공장 규모를 초과하여 확장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p> <p>2. (생략)</p> <p>② (생략)</p>	<p>(.....)</p> <p>.....)</p> <p>.....</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